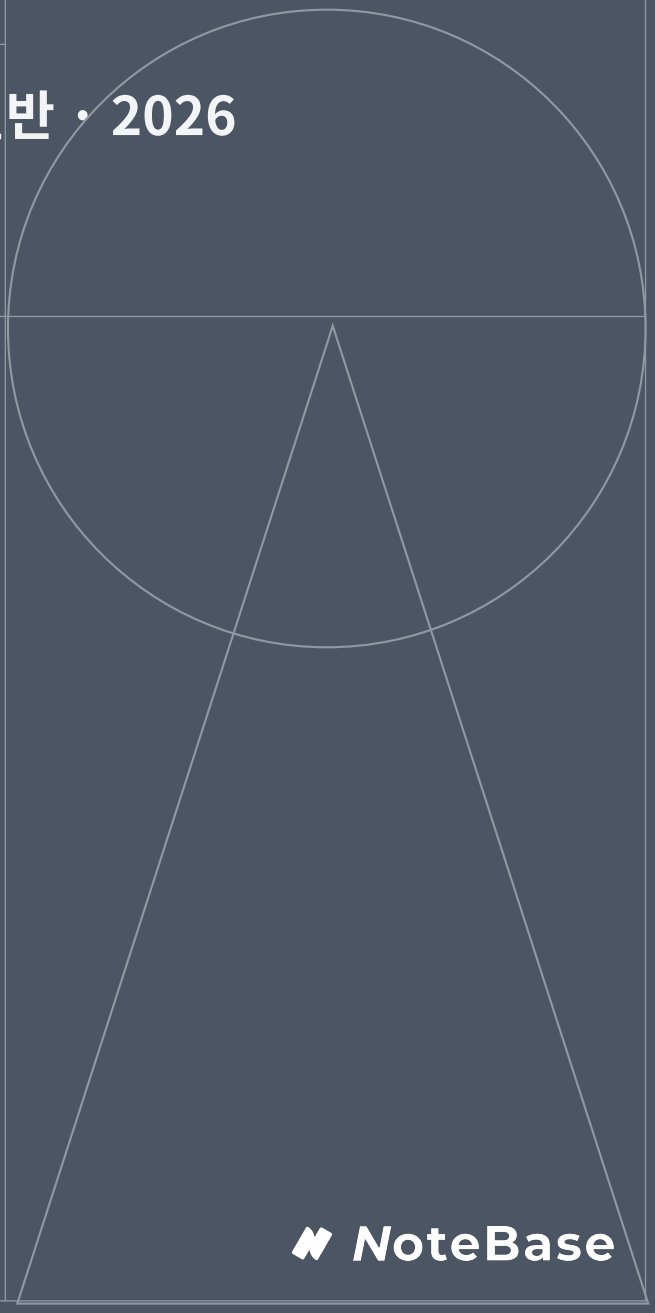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6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6

1. 안심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급한도액은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이다.

② 취급담당자는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가액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전자제품을 안심소포로 발송하면 분실 시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④ 안심소포 배달 시 포장상태, 파손여부, 무게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배달완료 처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안심소포의 취급한도, 신고가액 결정 주체, 손해배상 범위 및 배달 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심소포는 고가품·귀중품 등 특별히 주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등기소포로 보내고, 분실·훼손 시 정해진 한도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물품의 신고가액은 취급담당자가 감정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송인이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안심소포의 취급한도액은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취급담당자는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가액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이다.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므로 취급담당자가 물품의 실제 가치를 감정하여 신고가액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취급담당자는 신고가액이 취급한도를 초과하는지와 외부 기재 사항이 내용물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이다.
③ O — 전자제품도 안심소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실 시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④ O — 배달할 때 고객에게 포장 상태, 파손 여부, 표시된 무게와의 차이 등을 확인하게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배달완료로 처리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한도와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물품가액의 정당성을 감정하는 업무'로 바꾸어 놓았다.
취급담당자가 확인한다는 말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확인 대상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심소포 선지는 '가액 결정 주체는 발송인', '취급담당자는 한도와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배상은 보험가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의 세 기준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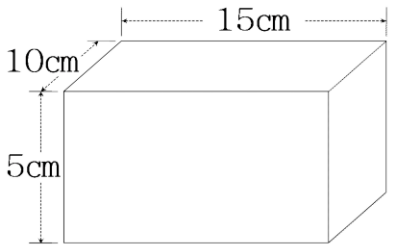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고, 담당자는 한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배상은 한도 내 실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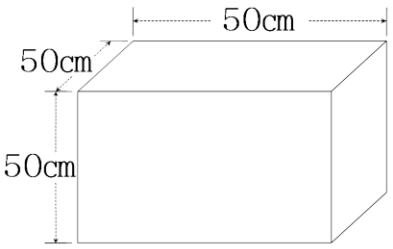
NoteBase

2. 다음 소포상자 중 국내소포우편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은?(단, 계약소포우편물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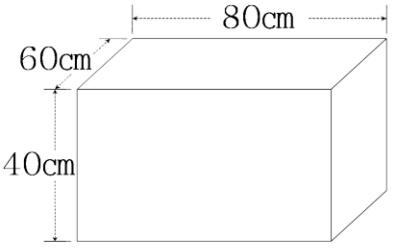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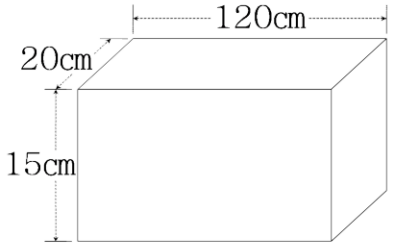
②



③



④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계약소포가 아닌 국내소포 상자의 세 변을 더한 크기와 한 변의 최대 길이를 접수 규격에 대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상자형 소포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으로 계산한다. 세 변의 합은 최소 35*cm* 이상, 최대 160*cm* 이하이어야 하고, 어느 한 변도 100*cm*를 초과할 수 없다. 최소 규격에서는 가로가 17*cm* 이상, 세로가 12*cm*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에서 계약소포를 제외했으므로 이 일반 규격을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크기=가로+세로+높이

계산한 크기가 35*cm* 이상 160*cm* 이하인지 확인한 뒤, 한 변이 100*cm*를 초과하는지도 따로 확인한다. 세 변의 합만으로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조건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① 15 + 10 + 5 = 30*cm*이다.
② 50 + 50 + 50 = 150*cm*이다.
③ 80 + 60 + 40 = 180*cm*이다.
④ 120 + 20 + 15 = 155*cm*이지만 한 변이 120*cm*이다.

선지 판단

① X — 세 변의 합이 30*cm*로 최소 크기 35*cm*에 미달하고, 15*cm*와 10*cm*도 최소 가로 17*cm*, 세로 12*cm* 조건에 미달한다. 올바르게는 세 변의 합이 35*cm* 이상이고 가로·세로의 최소 기준도 충족하는 상자여야 한다.
② O — 세 변의 합이 150*cm*로 허용 범위 안에 있고, 가장 긴 변도 50*cm*이므로 100*cm* 이하 조건을 충족한다.
③ X — 세 변의 합이 180*cm*로 최대 크기 160*cm*를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세 변의 합이 160*cm* 이하여야 한다.
④ X — 세 변의 합은 155*cm*로 허용 범위 안이지만 120*cm*인 한 변이 최대 길이 100*cm*를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모든 변이 각각 100*cm* 이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세 변의 합만 보면 접수 가능해 보이지만, 한 변의 최대 길이 조건에서 탈락한다. ①은 합계뿐 아니라 최소 가로·세로 조건도 함께 위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 변의 합이 35*cm* 이상 160*cm* 이하인지 계산하고, 다음으로 가장 긴 변이 100*cm* 이하인지 확인한다. 작은 상자는 가로 17*cm*, 세로 12*cm*의 최소 조건도 추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내소포 상자 규격은 '합계 35 ~ 160*cm*, 한 변 100*cm* 이하, 최소 가로 17*cm*·세로 12*cm*'이다.

NoteBase

3. 서신송달업자가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서신송달업 대여금지를 위반하여 2차 적발된 경우
(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차 적발된 경우
(다)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한 서신을 취급하여 1차 적발된 경우

	(가)	(나)	(다)
①	1개월	3개월	3개월
②	3개월	3개월	1개월
③	3개월	6개월	1개월
④	6개월	6개월	3개월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서신송달업자가 우편사업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기간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서신송달업 대여금지란 서신송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업개선명령은 서신송달서비스의 적정한 제공 등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처분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서신송달업 대여금지를 위반한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3차 이상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따라서 (가), (나), (다)는 각각 3개월, 3개월, 1개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1개월, (다)를 3개월로 제시한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3개월, (나) 3개월, (다) 1개월이다.
② O — (가) 3개월, (나) 3개월, (다) 1개월로 별표 6의 처분기준과 모두 일치한다.
③ X — (나)를 6개월로 제시한 점이 틀렸다.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의 3차 이상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이므로, 올바르게는 (가) 3개월, (나) 3개월, (다) 1개월이다.
④ X — (가)를 6개월, (나)를 6개월, (다)를 3개월로 제시한 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3개월, (나) 3개월, (다) 1개월이다.

오답 포인트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의 3차 이상 위반을 다른 위반행위의 3차 이상 기준인 6개월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대여금지 2차 위반과 중량·요금 기준 1차 위반의 기간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면 ①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위반행위를 대여금지,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중량·요금 기준 위반으로 구분한 다음 위반 횟수의 열을 대조한다. 이 문항에서는 대여금지 2차는 3개월, 개선명령 불이행 3차 이상은 3개월, 중량·요금 기준 위반 1차는 1개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여 2차 3개월, 개선명령 3차 3개월, 중량·요금 1차 1개월로 정리된다.

NoteBase

4. 다음 중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우편물만을 모두 고르면? (단, 익일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은 제외함)

ㄱ. 외화등기	ㄴ. 통화등기
ㄷ. 민원우편	ㄹ. 온라인환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물의 종류별 익일특급 필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처음부터 익일특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우편물과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익일특급을 부가할 수 있는 우편물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익일특급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원칙적으로 접수일의 다음 배달일에 배달하는 국내특급 서비스이다.

핵심 구분

외화등기, 민원우편, 온라인환은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한다. 외화등기는 보험취급·본인지정배달·익일특급을 결합한 맞춤형 계약등기이고, 민원우편은 발송과 회송 모두 익일특급으로 송달하며, 온라인환증서도 익일특급으로 송달한다. 반면 통화등기는 발송인이 특급취급을 요구하면 익일특급을 부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하는 우편물은 아니다. 따라서 필수 대상은 ㄱ, ㄷ,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외화등기와 ㄷ 민원우편은 필수 대상이지만, ㄹ 온라인환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 ㄱ, ㄷ
올바른 표현: ㄱ, ㄷ, ㄹ

② X
ㄷ 민원우편과 ㄹ 온라인환은 필수 대상이지만, ㄱ 외화등기가 빠져 있다.
틀린 표현: ㄷ, ㄹ
올바른 표현: ㄱ, ㄷ, ㄹ

③ X
ㄱ 외화등기와 ㄹ 온라인환은 필수 대상이지만, 선택적으로 특급취급을 부가할 수 있는 ㄴ 통화등기를 포함했고 필수 대상인 ㄷ 민원우편을 빠뜨렸다.
틀린 표현: ㄱ, ㄴ, ㄹ
올바른 표현: ㄱ, ㄷ, ㄹ

④ O
ㄱ 외화등기, ㄷ 민원우편, ㄹ 온라인환은 모두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하는 대상이다. ㄴ 통화등기는 필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한 조합이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통화등기에 익일특급을 부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익일특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가능'과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우편물이 익일특급을 기본 구성으로 포함하는지, 발송인이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는지만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익일특급인 외화등기·민원우편·온라인환은 포함하고, 선택 부가 대상인 통화등기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필수 익일특급은 '외·민·온', 통화등기는 선택이다.

NoteBase

5. 생활정보홍보우편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착형을 위탁제작하는 경우, 홍보물인쇄비는 1장당 80원이다.

② 브로마이드형은 규격 요금을 적용하며 중량 한도는 50g이다.

③ 카탈로그형은 규격 외 요금을 적용하며 우편요금 감액률은 27%이다.

④ 봉입형은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는 우체국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서비스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활정보홍보우편의 유형별 제작 방식과 적용 요금, 우편요금 감액률, 이용 중량 한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일정 지역의 불특정 수취인에게 생활정보 관련 홍보물을 일반통상우편물로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접착형·봉투형·봉입형은 규격 우편요금을 적용하고 이용 중량 한도는 50*g*이며, 브로마이드형·카탈로그형은 규격 외 우편요금을 적용하고 이용 중량 한도는 1,200*g*이다. 카탈로그형의 우편요금 감액률은 27%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접착형을 위탁 제작할 때 A4·B5 용지 1장의 홍보물 인쇄비는 80원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브로마이드형에 '규격 요금'을 적용하고 중량 한도를 50*g*이라고 한 부분이다. 브로마이드형은 규격 외 우편요금을 적용하며 이용 중량 한도는 1,200*g*이다.
③ O — 카탈로그형은 규격 외 우편요금을 적용하며 우편요금 감액률은 27%이다.
④ O — 봉입형은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 제작을 우체국에 위탁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브로마이드형을 접착형·봉투형·봉입형과 같은 규격 전단지형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브로마이드형은 전단지형에 속하더라도 규격 외 우편물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편물 유형을 규격과 규격 외로 나눈다. 접착형·봉투형·봉입형은 규격·50*g*, 브로마이드형·카탈로그형은 규격 외·1,200*g*의 짝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접·봉·입은 규격 50, 브·카는 규격 외 1,200이며 카탈로그형 감액률은 27%이다.

NoteBase

6. 국내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접수우체국에서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한다.

②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 부가서비스는 취급할 수 없다.

④ 발송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날짜도장, 발송 유효기간, 취급대상과 부가서비스, 유효기간 경과 후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각 항목의 원칙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 = 발송인이 우표를 붙이지 않고 보내며, 계약에 따라 수취인이 우편요금과 취급수수료를 부담하는 우편물이다.
발송 유효기간 = 계약에 따라 해당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 우편일반 학습교재상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을 생략한다.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원칙이고,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등기소포우편물·계약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발송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발송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을 생략하므로, 접수우체국에서 날짜도장을 날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접수우체국에서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한다'
올바른 표현: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을 생략한다.'

② X
발송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원칙이므로 3년이라는 기간이 틀리다.
틀린 표현: '계약일로부터 3년'
올바른 표현: '계약일로부터 2년이 원칙이다.'

③ X
취급대상을 통상우편물·등기소포우편물·계약등기로 제시한 부분은 맞지만,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부가서비스는 취급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④ O
발송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환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3년'을 익숙한 장기 계약기간으로 오인하거나, ③에서 취급대상만 맞는 것을 보고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③은 '부가서비스는 취급할 수 없다'가 함정이며,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날짜도장 생략, 유효기간 2년 원칙, 세 가지 취급대상과 부가서비스 가능, 기간 경과 시 발송인 반환'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선지의 주체·기간·가능 여부·처리 방향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수취인부담은 '소인 생략·2년·부가 가능·기간 경과 시 발송인 반환'으로 기억한다.

NoteBase

7. 크기와 무게가 같고 등기번호 순으로 제출한 국내 등기통상우편물의 감액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우편물량은 1회 접수 기준임)

(가) 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으로 제출한 계약등기우편물 300통
(나) 접수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제출한 요금별납 일반등기우편물 500통
(다) 자체제작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요금별납 선택등기우편물 1,500통

	(가)	(나)	(다)
①	0%	2%	4%
②	0%	4%	3%
③	0.5%	2%	3%
④	0.5%	4%	4%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통상우편물의 접수방법 감액과 선택등기의 접수물량 감액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물 종류별 감액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등기에는 접수방법 감액과 접수물량 감액을 함께 적용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접수방법 감액은 온라인 연계 제출, 자체제작 바코드 라벨 부착, 집배코드 인쇄·연번식 제출처럼 우체국의 접수·구분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출할 때 적용하는 감액이다. 접수물량 감액은 선택등기를 일정 수량 이상 한 번에 접수할 때 추가로 적용하는 감액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등기통상우편물 감액요건에 따르면 계약등기는 동일 발송인이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 발송해야 감액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의 300통은 1회 최저 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0%이다. 접수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 제출하면 2%이므로 (나)는 2%이다. 자체제작 바코드 라벨 부착은 1%이고, 선택등기 1,500통은 1,000통 이상 물량 감액 3%가 추가된다. 두 감액을 동시에 적용하므로 (다)는 1% + 3% = 4%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 0%, (나) 2%, (다) 4%로 세 값이 모두 맞다. 계약등기 300통은 1회 500통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온라인 연계 제출은 2%이며, 선택등기 1,500통의 자체제작 바코드 라벨 제출은 1%와 물량 감액 3%를 합해 4%이다.

② X
- (가) 0%는 맞지만 (나) 4%와 (다) 3%가 틀렸다.
- 틀린 표현: (나) 4%, (다) 3%
- 올바른 표현: (나)는 온라인 연계 제출 감액 2%이고, (다)는 접수방법 감액 1%와 접수물량 감액 3%를 합한 4%이다.

③ X
- (나) 2%는 맞지만 (가) 0.5%와 (다) 3%가 틀렸다.
- 틀린 표현: (가) 0.5%, (다) 3%
- 올바른 표현: (가)는 계약등기 1회 500통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0%이고, (다)는 1% + 3% = 4%이다.

④ X
- (다) 4%는 맞지만 (가) 0.5%와 (나) 4%가 틀렸다.
- 틀린 표현: (가) 0.5%, (나) 4%
- 올바른 표현: (가)는 감액 대상 물량요건 미충족으로 0%이고, (나)는 온라인 연계 제출 감액 2%이다.

오답 포인트

(가)에서 집배코드 인쇄·연번식 제출의 0.5%만 보고 계약등기의 1회 500통 이상 요건을 놓치기 쉽다. 또한 (다)에서는 자체제작 바코드 라벨의 1%만 적용하거나 선택등기 1,000통 이상 물량 감액 3%만 적용하지 않고, 두 감액을 합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편물 종류별 감액 대상 요건을 확인한다. 대상이 되면 접수방법 감액률을 정하고, 선택등기인 경우 접수물량 구간의 감액률을 더한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출방법에 감액률이 있어도 0%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계약등기는 1회 500통 이상·월 10,000통 이상, 온라인 연계 2%·자체 바코드 1%·집배코드 연번식 0.5%, 선택등기 물량 감액은 100통 2%·1,000통 3%·10,000통 4%이다.

NoteBase

8. 우편사무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편취급관서의 업무종료 안내문
ㄴ. 전자우편 제작 시 제작센터로 발송하는 20㎏ 이하의 동봉물
ㄷ.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우편관서로 발송하는 사무용품
ㄹ.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송하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사무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우편사무우편물과 우정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통신사무우편물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사무우편물은 우편업무의 직접적인 수행을 위해 정해진 범위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다. 통신사무우편물은 우정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다른 사업 관련 문서 등을 보내고 그 요금을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우편물이다.

핵심 구분

우편취급관서의 업무종료 안내문과 전자우편 제작을 위해 제작센터로 보내는 20*kg* 이하의 동봉물은 우편사무우편물에 해당한다. 반면 우정사업조달센터가 우편관서로 보내는 사무용품과 우정정보관리원이 보내는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통신사무우편물에 해당한다. 현행 「우편업무 규정」은 조달센터 발송 일반용품과 정보관리원 발송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의 취급 및 통신사무 요금 정산을 규정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은 모두 우편사무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조합이다.

② X
ㄴ은 우편사무우편물이지만, ㄹ의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통신사무우편물이다.
틀린 표현: ㄴ, ㄹ
올바른 표현: ㄱ, ㄴ

③ X
ㄷ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송 사무용품과 ㄹ의 법원 진술최고서 답변 우편물은 모두 통신사무우편물이므로 우편사무우편물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ㄷ, ㄹ
올바른 표현: ㄱ, ㄴ

④ X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송 사무용품은 통신사무우편물이므로 포함할 수 없다.
틀린 표현: ㄱ, ㄴ, ㄷ
올바른 표현: ㄱ, ㄴ

오답 포인트

우정사업 관련 기관이 발송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우편사무우편물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④는 ㄱ과 ㄴ에 그럴듯한 ㄷ을 더한 함정이다. 발송기관의 이름보다 해당 우편물이 우편업무 자체를 위한 것인지, 통신사무로 처리되는 사무용품·사업 관련 문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을 먼저 우편사무와 통신사무로 나눈 뒤 조합을 확인한다. 업무종료 안내문과 전자우편 제작용 동봉물은 우편사무로, 조달센터의 사무용품과 정보관리원의 법원 답변 우편물은 통신사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업무종료 안내문·전자우편 동봉물은 우편사무, 조달센터 사무용품·법원 진술최고서 답변은 통신사무이다.

NoteBase

9. 국내우편물의 변경청구 및 반환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용증명우편물은 수취인이 주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인터넷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청구가 불가능하다.
ㄷ. 접수한 등기우편물을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한 후에 발송인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ㄹ.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취인은 보관국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청구, 발송인의 반환청구, 보관국 변경청구의 대상과 수수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청구권자와 제외 우편물, 우편집중국 발송 전후의 수수료, 보관국 변경 대상이 되는 보관우편물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주소·성명 변경청구 =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을 바꾸도록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수취인은 주소만 변경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 = 발송인이 이미 보낸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고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보관국 변경청구 = '우체국 보관' 표시 우편물 등 정해진 보관우편물을 다른 우체국에서 보관·교부하도록 수취인이 요청하는 것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ㄱ은 틀리다. 내용증명우편물은 수취인 주소변경청구의 제외 대상이다. 주소·성명을 바꾸려면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 작성해 발송하거나 봉투·원본·등본의 내용을 모두 같게 고쳐 발송해야 한다.
ㄴ은 옳다. 인터넷우표에는 수취인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청구가 불가능하다.
ㄷ은 옳다. 발송인이 등기우편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우편집중국 발송 전이면 무료이고, 발송 후이면 등기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ㄹ은 틀리다.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일시 보관 중인 우편물은 보관국 변경청구의 대상인 보관우편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의 2026년도 우편일반 학습교재도 위와 같이 청구 대상과 수수료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옳은 ㄷ이 빠져 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수취인이 주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② O — 인터넷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주소·성명 변경청구가 불가능하고, 등기우편물을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한 뒤 발송인이 반환청구를 하면 등기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따라서 ㄴ과 ㄷ만 옳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ㄴ이 빠져 있다.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체국에 보관 중인 우편물은 보관국 변경청구 대상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④ X —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보관 중인 우편물'이 아니라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 등 정해진 보관우편물'에 대해 보관국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우체국이 현재 보관 중인 우편물'과 제도상 '보관우편물'을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수취인 부재로 잠시 보관하는 우편물은 보관국 변경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반환청구 수수료는 접수 직후가 아니라 우편집중국 발송 전후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청구인이 발송인인지 수취인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내용증명·인터넷우표처럼 변경이 제한되는 우편물인지 판단한다. 반환청구 수수료는 우편집중국 발송 전이면 무료, 발송 후 등기우편물이면 등기취급수수료로 구분한다. 보관국 변경은 단순히 우체국에 보관 중인지가 아니라 제도상 보관우편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증명·인터넷우표는 변경 제한, 집중국 발송 후 등기 반환은 등기취급수수료, 부재 보관은 보관국 변경 대상이 아니다.

NoteBase

10. 우표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훼손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우표책은 교환이 가능하다.

②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분실한 때에는 그 조제에 쓰인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요금인상 전의 구권 훼손엽서를 교환 요청하는 경우, 신권과 구권의 차액에 교환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찢어져서 사용하지 못한 엽서의 경우,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표류의 교환 대상, 관리 중 분실·훼손에 대한 변상액, 구권 훼손엽서의 교환금액, 찢어진 엽서의 교환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구권 훼손엽서 = 우편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발행된 엽서 가운데 사용하지 않았으나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그대로 판매하기 어려운 엽서이다.
교환수수료 = 훼손엽서를 같은 금액의 우표류로 교환할 때 받는 금액이다.

핵심 구분

우표책·첩은 미사용이고 판매 가능한 상태이더라도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 중인 우표류를 분실하면 정가 상당액을 변상하고, 오염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조제에 든 실비액을 변상한다. 요금 인상 전의 구권 훼손엽서를 신권으로 교환할 때에는 신권과 구권의 차액에 교환수수료를 더해 징수한다. 일부가 찢어진 엽서는 우편요금 표시 인영을 포함하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어야 교환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우표책·첩은 미사용이고 훼손되지 않아 판매 가능한 상태라도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린 표현: 미사용 우표책은 교환이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미사용 우표책·첩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X
관리 중인 우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조제 실비액이 아니라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조제 실비액은 우표류를 오염하거나 훼손한 경우의 변상 기준이다.
틀린 표현: 분실한 때에는 그 조제에 쓰인 실비액을 변상한다.
올바른 표현: 분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③ O
요금 인상 전의 구권 훼손엽서를 신권으로 교환하면 신권과 구권의 차액에 훼손엽서 교환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X
찢어진 미사용 엽서는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어야 교환할 수 있다. 3분의 1 이상만 남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틀린 표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올바른 표현: 인영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분실과 오염·훼손의 변상 기준을 서로 바꾸었고, ④는 찢어져 없어진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남은 부분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말로 뒤집었다. 또한 일반 미사용 우표의 교환 가능 원칙을 우표책·첩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①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표류 관리 문제에서는 먼저 대상이 일반 우표인지 우표책·첩인지 확인한다. 변상 문제는 분실이면 정가, 오염·훼손이면 조제 실비로 구분한다. 구권 훼손엽서의 교환은 차액과 수수료를 함께 보고, 찢어진 엽서는 인영 포함 여부와 전체의 3분의 2 이상 잔존 여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우표책·첩은 교환 제외, 분실은 정가·훼손은 실비, 구권 훼손엽서는 차액과 수수료, 찢어진 엽서는 인영 포함 3분의 2 이상이다.

NoteBase

11. 다음 상황에서 접수된 우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객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사는 딸에게 유리병에 들어있는 꿀 1㎏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서 상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한 후 등기소포우편물로 접수하였다.

① 해당 우편물에 부여된 집배코드는 '강'으로 시작한다.
② 우편운반차에 우편물을 정리할 때는 수취인 주소가 적힌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③ 파손되기 쉬운 우편물이므로 우편운반차를 사용하여 운송할 때는 상단에 적재한다.
④ 당일 접수된 국제특급우편물(EMS)이 많아 1편의 운송편으로 모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 등기소포우편물은 2순위로 발송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소포우편물의 집배코드, 운반차 적재 방법, 운송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주소의 행정구역명이 아니라 실제 집배코드의 집중국 약호를 적용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집배코드 = 우편물을 구분·운송·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문자와 숫자로 나타낸 코드이다.
운송 우선순위 = 한 운송편에 모든 우편물을 실을 수 없을 때 어떤 우편물을 먼저 보내는지 정한 순서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코드 체계에서 강원청 소속 집중국은 알파벳 약호를 사용하며, 강릉우편집중국의 약호는 C2이다. 따라서 강릉시로 보내는 우편물의 집배코드는 '강'이 아니라 'C2'로 시작한다. 운반차에는 주소가 적힌 면을 위로 향하게 정리하고, 가볍거나 파손되기 쉬운 소포는 위쪽에 적재한다. 한 운송편에 전량을 실을 수 없으면 국제특급우편물(EMS)은 1순위, 등기소포우편물은 2순위로 운송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강릉시의 행정구역명 첫 글자를 그대로 집배코드에 쓰는 것이 아니다. 강릉우편집중국의 약호인 C2가 적용된다.
틀린 표현: 집배코드는 '강'으로 시작한다.
올바른 표현: 집배코드는 'C2'로 시작한다.

② O
우편운반차에 우편물을 정리할 때에는 식별과 취급이 쉽도록 수취인 주소가 적힌 면이 위를 향하게 한다.

③ O
유리병이 든 소포는 파손되기 쉬우므로 다른 우편물의 무게에 눌리지 않도록 운반차의 상단에 적재한다.

④ O
한 운송편에 모든 우편물을 실을 수 없을 때 국제특급우편물(EMS)은 1순위이고, 등기소포우편물은 2순위이므로 제시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강'은 강릉이라는 지명과 집배코드의 집중국 약호를 혼동하게 만든 표현이다. 집배코드 첫 부분은 단순한 행정구역명 축약이 아니므로 해당 집중국의 정해진 약호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배코드 문제에서는 주소의 시·도명으로 코드를 추측하지 않고 집중국 약호를 먼저 확인한다. 적재 문제에서는 주소면은 위로, 가볍거나 취약한 소포는 상단으로 판단한다. 운송량 초과 상황에서는 EMS가 1순위이고 등기소포가 2순위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강릉 집중국은 C2, 주소면은 위, 취약 소포는 상단, EMS 1순위·등기소포 2순위이다.

NoteBase

12. 배달 시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화등기	ㄴ. 물품등기
ㄷ. 유가증권등기	ㄹ. 외화등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이 집배원 앞에서 우편물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종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내용물의 금액·명칭을 대조하는 등기와 포장 상태만 확인하는 물품등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개피는 봉한 우편물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우편업무 규정」상 통화등기는 내용금액과 표기금액을, 유가증권등기는 증서의 명칭·금액·내용을, 외화등기는 실제 외화 금액과 단말기에 표시된 금액을 대조하기 위해 수취인이 집배원 앞에서 우편물을 열어 확인한다. 반면 물품등기는 우편물을 열지 않고 봉투와 포장 상태의 이상 유무만 확인한다. 따라서 개봉 확인 대상은 ㄱ 통화등기, ㄷ 유가증권등기, ㄹ 외화등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통화등기는 맞지만, ㄴ 물품등기는 개봉 대상이 아니며 ㄷ 유가증권등기와 ㄹ 외화등기가 빠져 있다.
틀린 표현: ㄱ, ㄴ
올바른 표현: ㄱ, ㄷ, ㄹ

② X
ㄱ 통화등기와 ㄹ 외화등기는 맞지만, 개봉 후 증서의 명칭·금액·내용을 대조하는 ㄷ 유가증권등기가 빠져 있다.
틀린 표현: ㄱ, ㄹ
올바른 표현: ㄱ, ㄷ, ㄹ

③ O
ㄱ 통화등기, ㄷ 유가증권등기, ㄹ 외화등기는 모두 배달 시 수취인이 집배원 앞에서 우편물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종별이다.

④ X
ㄷ 유가증권등기와 ㄹ 외화등기는 맞지만, 개봉하지 않고 포장 상태만 확인하는 ㄴ 물품등기가 포함되었고 개봉 대상인 ㄱ 통화등기가 빠져 있다.
틀린 표현: ㄴ, ㄷ, ㄹ
올바른 표현: ㄱ, ㄷ, ㄹ

오답 포인트

물품등기도 보험취급 우편물이므로 내용물까지 열어 확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물품등기는 봉투와 포장 상태만 확인하고, 금액이나 증서 내용을 대조해야 하는 통화등기·유가증권등기·외화등기만 개봉 확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달 시 실제 내용물의 금액·명칭을 표기 정보와 대조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대조가 필요한 통화·유가증권·외화는 개봉하고, 물품은 포장 상태만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유가증권·외화는 열어 대조하고, 물품은 포장만 확인한다.

NoteBase

13.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를 바르게 처리한 집배원은?

① 갑: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우체국에 2일간 보관하였다.

② 을: 3차 배달 시 수취인 부재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발행하여 부착하였다.

③ 병: 재배달 기간 중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 수취인의 가족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였다.

④ 정: 수취인이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부재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반송하였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특별송달우편물을 3차까지 배달하지 못했을 때의 반환 절차와 송달불능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특별송달의 보관 여부와 '수취인부재'의 의미이다.

용어 풀이

수취인부재 = 수취인이 장기여행, 군 복무, 교도소·구치소 수감 등으로 송달장소에 장기간 없는 상태이다. 단순히 외출하여 집이 잠겨 있는 폐문부재와 구별된다.

핵심 구분

현행 우편업무 규정상 특별송달우편물은 3회 배달한 뒤 보관하지 않고 반환한다. 또한 수취인의 장기부재처럼 배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표시하여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교도소 수감으로 종전 송달장소에 장기간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부재'로 처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특별송달우편물은 3차 배달까지 하지 못하면 우체국에 2일간 보관하지 않고 반환한다.
틀린 표현: 우체국에 2일간 보관하였다.
올바른 표현: 3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② X
3차 배달까지 실패한 특별송달우편물은 반환 대상이므로, 다시 찾아가도록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3차 배달 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여 부착하였다.
올바른 표현: 3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미배달 사유를 표시하여 반환한다.

③ X
특별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거나, 수취인이 부재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무원·고용인·동거인에게 보충송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족이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 창구에서 교부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가 아니다.
틀린 표현: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한 수취인의 가족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였다.
올바른 표현: 송달장소에서 수취인 또는 적법한 보충송달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④ O
교도소 수감으로 종전 송달장소에 장기간 없는 경우는 '수취인부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표시하여 반송한 처리는 옳다.

오답 포인트

특별송달을 2일 보관하는 다른 특수취급우편물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수취인부재'를 단순 외출로 생각하면 교도소 수감이라는 장기부재 사유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편물의 종류가 특별송달인지 확인한다. 특별송달이면 '3회 배달 후 보관 없이 반환'을 적용하고, 수취인이 장기여행·군 복무·수감 등으로 장기간 없는지는 '수취인부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별송달은 3회 배달 후 무보관 반환, 수감은 수취인부재이다.

NoteBase

14.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우체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교환국 및 통상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산국제우체국은 항공 및 선편우편물의 교환업무와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제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EMS),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로 구분한다.

④ 우리나라는 국제통상우편물을 내용물에 따라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인쇄물, K-Packet,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로 구분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물의 법정 종류, 국제우편 취급우체국별 담당 업무, 국제통상우편물의 내용물별 구분을 묻는다. 핵심은 교환국·통관국·통상국의 기능과 국제통상우편물의 종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교환국은 국제우편물을 외국으로 직접 발송하거나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직접 받는 우체국이다. 통관국은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세관검사를 취급하는 우체국이고, 통상국은 국제우편물의 접수와 배달을 수행하는 일반우체국이다.

핵심 구분

국제우편규정상 국제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로 구분한다. 국제우편 취급기관의 업무는 기관별로 다르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항공우편물 교환업무를, 부산국제우체국은 선편우편물 교환업무를,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해상특송우편물 등의 교환업무를 담당한다. 부산국제우체국과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통관국이지만,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통상국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해상특송우편물 등의 교환업무와 통관국 업무를 수행하지만 통상국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교환국 및 통상국의 업무
올바른 표현: 교환국 및 통관국의 업무

② X
부산국제우체국은 선편우편물의 교환업무를 담당하며 통관국과 통상국의 업무도 수행한다. 항공우편물의 교환업무는 국제우편물류센터가 담당한다.
틀린 표현: 항공 및 선편우편물의 교환업무
올바른 표현: 선편우편물의 교환업무와 통관업무를 수행하며 통상국 업무도 수행한다.

③ O
국제우편규정의 분류와 일치한다. 국제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로 구분한다.

④ X
K-Packet은 국제통상우편물의 내용물별 구분에 포함되는 종별이 아니다. 이 자리에는 소형포장물이 들어가야 한다.
틀린 표현: K-Packet
올바른 표현: 국제통상우편물은 내용물에 따라 서장, 우편엽서, 항공서간, 인쇄물, 소형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로 구분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명칭이 비슷한 통관국과 통상국을 바꾸어 놓았고, ②는 부산국제우체국의 선편 교환업무에 항공 교환업무를 섞었다. ④는 실제 국제우편서비스인 K-Packet을 국제통상우편물의 내용물별 종별인 소형포장물 자리에 넣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법정 대분류는 통상·소포·특급·장관 고시 우편물로 정리한다. 기관별 업무는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항공, 부산국제우체국은 선편,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은 해상특송 등의 교환업무로 연결하고, 통상국 여부와 통관국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내용물별 국제통상우편물 목록에서는 K-Packet이 아니라 소형포장물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제우편 대분류는 통상·소포·특급·장관 고시, 교환업무는 항공=국제우편물류센터·선편=부산국제우체국, 통상 종별은 K-Packet이 아니라 소형포장물이다.

NoteBase

15. 국제소포우편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달통지 부가취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500원이다.
ㄴ. 물건과 통화를 함께 발송할 수 있는 기록취급 우편물이다.
ㄷ. 항공 발송 시 HS코드를 시스템에 필수 입력해야 하나, 선편 발송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국제소포우편물에는 보통소포, 보험소포, 우편사무소포, 전쟁포로·민간인 피억류자 소포가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소포우편물의 내용품 범위, 부가취급, 사전통관정보 제공 및 종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배달통지 수수료와 항공·선편 공통 의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배달통지는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부가서비스이다. HS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번호로, 국제우편물의 신속한 통관과 정확한 관세율 적용에 활용된다.

핵심 구분

국제소포우편물은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하여 회원국 또는 지역 상호 간에 교환하는 기록취급 우편물이다. 배달통지 부가취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500원이다. 사전통관정보 제공 대상에는 항공 국제소포뿐 아니라 선편 국제소포도 포함되므로 선편이라는 이유로 HS코드 입력을 생략할 수 없다. 국제소포는 보통소포, 보험소포, 우편사무소포, 전쟁포로·민간인 피억류자 소포로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ㄹ이 모두 옳다. 배달통지 수수료는 1,500원이고, 제시된 네 종류는 국제소포우편물의 분류에 해당한다.

②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판단문의 조합이 아니다.
- 틀린 표현: ㄴ, ㄷ
- 올바른 표현: 국제소포는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하는 기록취급 우편물이며, 항공과 선편 모두 사전통관정보 제공 대상이므로 필요한 HS코드를 입력한다. 옳은 조합은 ㄱ, ㄹ이다.

③ X
-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국제소포는 통화를 내용품으로 함께 보내는 우편물이 아니다.
- 틀린 표현: ㄱ, ㄴ, ㄹ 중 ㄴ
- 올바른 표현: ㄴ을 제외한 ㄱ, ㄹ이 옳다.

④ X
-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선편 국제소포도 사전통관정보 제공 대상이므로 선편 발송이라는 이유로 HS코드 입력을 생략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ㄱ, ㄷ, ㄹ 중 ㄷ
- 올바른 표현: ㄷ을 제외한 ㄱ, ㄹ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옳은 ㄱ·ㄹ에 각각 틀린 ㄴ 또는 ㄷ을 하나씩 끼워 넣은 조합이다. 특히 '기록취급'이라는 말만 보고 통화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전통관정보 의무가 항공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합형 문항에서는 각 판단문을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국제소포는 '서장·통화 제외', 부가취급은 '배달통지 1,500원', 통관정보는 '항공·선편 모두', 종류는 '보통·보험·우편사무·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소포는 서장·통화를 빼고, 배달통지는 1,500원이며, HS 통관정보는 항공·선편 모두에 적용된다.

NoteBase

16. 국제우편과 관련된 제도 및 부가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통상우편물의 종류 중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② 우체국쇼핑 해외배송 서비스는 국제특급우편물(EMS) 또는 국제소포(항공)로 발송한다.

③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는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④ 미국으로 식품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FDA 사전신고는 국제특급우편물(EMS)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의 사전 통관정보 제공, 우체국쇼핑 해외배송,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미국행 식품의 FDA 사전신고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사전 통관정보 제공 = 국제우편물이 상대국에 도착하기 전에 발송인·수취인과 내용품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상대국 우정과 세관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 수출신고된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실제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이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 통지하는 서비스이다.

핵심 구분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는 국제통상우편물인 소형포장물도 포함된다. 우체국쇼핑 해외배송은 EMS 또는 항공등기소형포장물로 발송하며,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은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미국행 식품의 FDA 사전신고는 EMS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제 항공·선편우편물 전반에 적용되며, 가정에서 만든 비상업적 식품 등에는 면제·완화 기준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소형포장물은 국제통상우편물에 속하면서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이므로 '해당되는 것은 없다'는 표현이 틀리다.
틀린 표현: 국제통상우편물 중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은 없다.
올바른 표현: 국제통상우편물 중 소형포장물은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② X
우체국쇼핑 해외배송은 EMS 또는 항공등기소형포장물로 발송하므로 '국제소포(항공)'가 틀리다.
틀린 표현: EMS 또는 국제소포(항공)로 발송한다.
올바른 표현: EMS 또는 항공등기소형포장물로 발송한다.

③ O
수출신고된 물품의 우편발송 사실을 세관에 통지하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는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④ X
미국행 식품의 FDA 사전신고 대상은 EMS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제 항공·선편우편물 전반이므로 'EMS에 한하여'가 틀리다. 다만 가정에서 만든 비상업적 식품 등에는 면제·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틀린 표현: FDA 사전신고는 EMS에 한하여 적용된다.
올바른 표현: FDA 사전신고는 미국행 식품이 든 국제 항공·선편우편물 전반에 적용되며, 정해진 면제·완화 대상은 별도로 구분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국제소포(항공)'와 실제 배송수단인 '항공등기소형포장물'을 혼동하거나, ④에서 안내 항목이 EMS 홈페이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을 EMS에 한정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별로 대상 우편물, 발송 수단, 취급 우체국, 적용 범위를 각각 분리해 판단한다. 특히 '없다', '전국', '한하여'와 같은 범위 표현은 예외나 포함 대상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형포장물도 사전 통관 대상, 쇼핑 해외배송은 EMS·항공등기소형포장물, 수출발송확인은 전국 우체국, 미국행 식품 신고는 EMS 한정이 아니다.

NoteBase

17.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접수와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류를 발송할 경우에는 유럽연합 ICS2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보험취급할 경우에는 보험취급 수수료를 주소기표지에 별도로 기재한다.

③ 판매용 의류를 발송할 경우, 세관신고서 CN22(비서류용 주소기표지)를 작성한다.

④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송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권장한 후 접수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서류·비서류 구분, 세관신고서 종류, 보험취급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순수 서류와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정보 및 보험취급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ICS2는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관한 사전 안전·보안 정보를 제출하여 통관 위험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다.
CN22와 CN23은 국제우편물의 내용품과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서식이며, EMS 상품·유가물품에는 CN23이 인쇄된 상품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한다.

핵심 구분

물품이 들어 있지 않은 순수 서류는 ICS2의 물품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용 의류처럼 상품을 보내는 비서류 우편물은 정확한 세관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EMS 안내에 따르면 상품·유가물품은 CN23이 인쇄된 상품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한다. 보험취급에서는 보험가액을 신고하고 그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계산되며, 전자제품은 보험취급 불가 품목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물품이 들어 있지 않은 순수 서류는 유럽연합 ICS2의 물품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② X
보험취급 수수료는 신고한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수납하는 금액이므로 조서기표지에 수수료를 별도 신고사항처럼 기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틀린 표현: '보험취급 수수료를 조서기표지에 별도로 기재한다.'
올바른 표현: 보험취급 시 보험가액을 신고하고, 보험취급 수수료는 그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수납한다.

③ X
판매용 의류는 서류가 아니라 상품이므로 CN22가 아니라 CN23이 인쇄된 상품용 주소기표지를 사용한다.
틀린 표현: '세관신고서 CN22(비서류용 주소기표지)를 작성한다.'
올바른 표현: 판매용 의류를 발송할 때에는 CN23이 인쇄된 상품용 주소기표지를 작성한다.

④ X
휴대폰은 전자제품이므로 EMS 보험취급 불가 품목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을 권장한 뒤 접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틀린 표현: '보험가입을 권장한 후 접수한다.'
올바른 표현: 휴대폰은 보험취급할 수 없으며, 배터리 기준과 도착국 발송조건 등 일반 접수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여 접수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CN22와 CN23을 뒤바꾸거나, 고가품이면 모두 보험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판매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서류가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하고, 고가 여부와 별개로 보험취급 불가 품목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내용품이 순수 서류인지 물품인지 구분한다. 물품이면 ICS2 사전통관정보와 CN23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문제에서는 고가인지 판단하기 전에 해당 품목 자체가 보험취급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순수 서류는 ICS2 물품신고 대상이 아니고, EMS 상품은 CN23, 전자제품은 보험취급 불가로 기억한다.

NoteBase

18. 국제우편물의 행방조사청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제소포우편물의 행방조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가) 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행방조사 청구권자는 (나) 이다. 이때 항공우편으로 행방조사를 청구하면 청구요금은 (다) 이다.

	(가)	(나)	(다)
①	4	발송인 또는 수취인	무료
②	4	발송인	1,800원
③	6	발송인 또는 수취인	1,800원
④	6	발송인	무료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소포우편물의 행방조사 청구기한, 분실 시 청구권자, 항공우편 청구요금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제소포의 6개월과 국제특급우편물의 4개월을 구별하고, 분실 시 발송인 및 항공우편 청구 무료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행방조사 =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국제우편물의 이동 경로와 현재 상태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국제소포우편물의 행방조사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분실된 경우의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며, 항공우편으로 행방조사를 청구하면 청구요금은 무료이다. 국제우편규정 제35조는 일반적인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 특수취급수수료 기준도 소포우편물의 항공우편 행방조사 청구료를 무료로 정한다. 4개월은 국제특급우편물의 행방조사 청구기한이고, 1,800원은 외국으로 발송한 뒤 항공우편으로 주소변경·환부를 청구할 때의 요금이므로 행방조사 청구료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청구요금이 무료인 점은 맞지만, 국제소포의 청구기한과 분실 시 청구권자가 틀렸다.
- 틀린 표현: 4개월, 발송인 또는 수취인
- 올바른 표현: 6개월, 발송인

② X
- 분실 시 청구권자를 발송인으로 본 점은 맞지만, 국제소포의 청구기한은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 항공우편 행방조사 청구요금은 1,800원이 아니라 무료이다.
- 틀린 표현: 4개월, 1,800원
- 올바른 표현: 6개월, 무료

③ X
- 6개월은 맞지만, 분실된 경우의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며 항공우편 행방조사 청구요금은 무료이다.
- 틀린 표현: 발송인 또는 수취인, 1,800원
- 올바른 표현: 발송인, 무료

④ O
- 국제소포우편물은 발송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하고, 분실된 경우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며, 항공우편에 의한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이므로 세 항목이 모두 맞다.

오답 포인트

4개월을 국제소포에도 적용하거나, 일반적인 행방조사 청구권자인 '발송인 또는 수취인'을 분실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다. 또한 1,800원은 행방조사 청구료가 아니라 외국 발송 후 항공우편에 의한 주소변경·환부 청구료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우편 행방조사 문제에서는 먼저 우편물의 종류를 확인하여 국제소포는 6개월, 국제특급우편물은 4개월로 구분한다. 이어 사고 유형이 분실이면 발송인을 선택하고, 청구 방식이 항공우편이면 무료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국제소포 행방조사는 '6개월·분실은 발송인·항공은 무료'이다.

NoteBase

19.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권자는 발송인에 한한다.

② 우편물이 외국으로 발송된 후 반환청구에 따라 배달되지 않고 반송도착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③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의 반환청구는 우편물 접수국에서 발송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리 여부 검토 후 접수할 수 있다.

④ 접수국을 떠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가고 있는 등기우편물을 반환청구할 경우, 반환청구 수수료로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물 반환청구의 청구권자, 접수 가능 시점, 우편요금 환불 여부와 반환청구 수수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등기우편물이 접수국에서 발송된 뒤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운송 중일 때 적용되는 수수료의 종류이다.

용어 풀이

반환청구는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말고 발송인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기록취급 우편물은 등기번호 등으로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고,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은 이러한 추적 기록이 없는 우편물이다.

핵심 구분

국제우편물의 반환청구권자는 발송인에게만 있다.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은 접수우체국에서 발송되기 전이어야 수리 가능성을 검토하여 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등기우편물이 접수국에서 이미 발송되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이동 중이라면 반환청구 수수료는 국내등기취급수수료이다. 외국으로 발송된 뒤 반환청구에 따라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경우에는 처음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우편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발송인에 한하므로 옳다.

② O
우편물이 이미 외국으로 발송된 뒤 반환청구에 따라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어 접수우체국에 도착하더라도, 처음 납부한 우편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옳다.

③ O
기록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은 추적이 어려우므로 접수우체국에서 발송되기 전인 경우에 한하여 반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청구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접수국에서 발송되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이동 중인 등기우편물의 반환청구 수수료는 국제등기취급수수료가 아니라 국내등기취급수수료이므로 옳지 않다.
틀린 표현: 반환청구 수수료로 국제등기 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바른 표현: 반환청구 수수료로 국내등기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국제우편물'이라는 말만 보고 수수료도 국제등기취급수수료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접수국에서 발송된 뒤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이동 중인 단계에는 국내등기취급수수료가 적용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환청구 문제에서는 먼저 청구권자가 발송인인지 확인하고, 우편물이 접수국 발송 전인지 접수국 발송 후인지 외국 발송 후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기록취급 여부, 반환 가능성, 수수료와 우편요금 환불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환청구는 발송인만 가능하고, 접수국 발송 후 국제우편물류센터 이동 중에는 국내등기취급수수료가 적용된다.

NoteBase

20.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이 압수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② 국제특급우편물(EMS)의 경우,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부담한다.

③ 보험소포우편물은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④ 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물의 분실·파손·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과 면책 사유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압수·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EMS 배상금의 지급 주체, 48시간 지연배상 대상 우편물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손해배상 = 국제우편물이 분실·도난·훼손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지연 배달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 정해진 범위에서 그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불가항력 = 우정당국이 합리적으로 통제하거나 피할 수 없는 화재·천재지변 등의 사유이다.

핵심 구분

만국우편협약상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이 압수된 경우와 우정당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EMS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책임 있는 다른 우정당국이 있으면 우정당국 사이에서 정산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 손해배상 기준에서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납부한 우편요금을 배상하는 대상은 보험소포가 아니라 국제특급우편물(EMS)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우편물이 압수된 경우에는 우정당국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② O
EMS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당국이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실제 책임이 다른 우정당국에 있으면 그 뒤 우정당국 사이에서 배상액을 정산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납부한 우편요금을 배상하는 대상은 보험소포우편물이 아니라 국제특급우편물(EMS)이다.
틀린 표현: 보험소포우편물은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배달이 지연된 경우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올바른 표현: 국제특급우편물(EMS)은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배달된 경우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을 배상한다.

④ O
화재·천재지변 등 우정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보험소포와 EMS의 배상 사유를 바꾸어 놓은 데 있다. 보험소포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분실·도난·훼손을 배상하는 우편물이고, 48시간 지연에 따른 우편요금 배상은 EMS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지의 사고 유형이 압수·불가항력인지, 분실·도난·훼손인지, 지연인지 구분한다. 다음으로 지연 기준이 제시되면 우편물 종류를 확인한다.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은 EMS와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압수·불가항력은 면책, 보험소포는 보험가액, 48시간 지연은 EMS이다.

NoteBase